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이 의 신 청 규 정 정 비 를 위 한 8 개
법 령 의 일 부 개 정 에 관 한
대 통 령 령 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민석 (교육부 등 6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에 따라, 개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법령으로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른 기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권리구제 기간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항 중 “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를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8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납부 고지된 기여금에 이의가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3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4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를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평생교육법 시행령」의 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및 시정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를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행해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 ⑤ (생략)	제18조(도서관자료의 보상 절차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자는 <u>보상금액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u>	⑥ -----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 ----- -----.
⑦ <u>국립중앙도서관장은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u>	⑦ 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u>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상금액을 다시 통지</u>	
2. <u>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사실을 통지</u>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발급된 기여금에 이의가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기여금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0조의8(기여금의 납부주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납부 고지된 기여금에 이의가 있는 플랫폼운송사업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용의 정지를 요청한 시장등(법 제3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신청의 결과 및 이유 등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	제38조의3(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
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u>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u>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의2(폐기물부담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 ----- ----- <u>「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u><삭 제></u>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의5(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u>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u>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의5(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 ----- -----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u>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u>	<u><삭 제></u>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4(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① ~ ③ (생략)	제14조의4(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 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사유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신청 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 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 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 의가 있는 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①·② (생략) ③ <u>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제7조의3(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법 제5조에 따른 평가인정의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및 시정명령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광고의 제한) ①·② (생략)	제44조(광고의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광고 제한에 의의가 있는 제조업자등은 제2 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 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 ----- 「 <u>행정기본법</u> 」 제36조에 따라 --- -----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u><삭 제></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6174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연 락 처	(044) 205 - 2544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2254
기후에너지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연 락 처	(044) 201 - 6396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3813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4) 201- 6396